

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361
----------	------

2025년 2월 25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2월 3일, 남궁역 의원 외 27명
나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다. 상정일자 : 제3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2월 25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남궁역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도시공원 등에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의 조성이 증가하고 있음
-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보행로 오염, 강우시 미끄러움, 이물질에 의한 상해, 강우시 및 동절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1) 맨발 걷기 자원계획의 수립·시행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신설함(안 제4조제2항3항)
- 2) 지원사업시 맨발 보행로의 유지·보수,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제3호,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보행로 오염, 강우 시 미끄러움, 이물질에 의한 상해, 강우 및 동절기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·확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3년 제정된 바 있음.
- ‘맨발 보행로’¹⁾는 아직까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별도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, 건강을 위한 보행로(도로)이며 이용자 입장에서 휴양시설 또는 운동시설(자연체험장 등)로까지 인식되면서 시민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원에 폭넓게 조성²⁾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‘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·시행’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,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방지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,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‘맨발 보행로 조성·확충 및 정비 사업’ 이외에 ‘오염방지, 토사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’와 ‘맨발 걷기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,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1) 「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

2. "맨발 보행로"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.

가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다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
라.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

2) 시공원 총 199개소(공원여가센터, 자치구, 서울시설공단 등) 운영·관리(2025년 1월 기준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객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.

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·보수
- 4.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객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.</p>
<p>제5조(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)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 <p>3.·4. (생략)</p>	<p>제5조(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,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·보수</p> <p>4.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</p> <p>5.·6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